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297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량생산 장애인 휠체어 탑승 운전 자동차 중 머리지지대와 등받이가 설치된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머리지지대와 등받이가 휠체어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에 설치 의무를 면제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소량생산 자동차의 세부 안전기준별 확인방법 중 장애인 휠체어 탑승 운전 자동차의 확인방법을 개선(안 별표 5의3 제70호)

머리지지대와 등받이가 설치된 전동 휠체어를 대상으로 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머리지지대와 등받이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확인 방법을 개선

나. 기타 오류 수정(안 별표 5의3 제68호)

조문 상에 오타를 수정하고 오타 수정을 통하여 목의 구분이 명확히 되도록 개정

3. 의견제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 11. 09.(수) 까지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정책과, 전화 044-201-3840/3841, 팩스 044-201-558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우편번호 30103)